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9월 3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9월 16일(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제안이유

-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규정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위원 5명, 모두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을,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위원 11명 이내,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지용옥)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

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명시함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함
-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16일

제안자 : 장준호 의원의

□ 제안이유

-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촉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외부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안 제2조제2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각국장·공보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기획관리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기획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안과 같음)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	(개정안과 같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 제2조제4항중 “위촉위원”을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p>
<p>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각 국장·공보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기획관리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기획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p>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p>
<p>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 ……</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